

2026년 기업환경 개선사업 추가모집 재공고

관내 중·소기업의 노동·작업환경 개선, 소방시설 정비를 위하여 개선사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2026년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중·소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8. 3.

성 남 시 장

1. 모집개요

- 사 업 명: 2026년 기업환경 개선사업(추가모집)
- 모집기간: 2026. 8. 3.(월) ~ 8. 12.(수)
- 사업예산: 40,000천원(기존 선정업체 사업포기에 따른 잔여예산)
- 지원대상: 성남시 소재 중소기업(제조업), 지식산업센터
- 사업기간: 지원대상 확정 후 지체없이 사업추진이 가능하여야 하며, 2026년 11월까지 완료하여야 함
- 지원유형 및 지원내용

지원유형		세부 지원대상	지원 한도	지 원 내 용
노동 복지	노동 환경	매출액 200억원 이하 중소기업(제조업)	4천 만원 이내	기숙사, 식당, 화장실, 샤워실, 휴게공간 등 ※ 매칭비율 : 기업 순이익별 차등 보조 (20%~30% 이상)
	지식 산업 센터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		노후 주차장 및 화장실, 공공시설물 등 ※ 매칭 비율 : 도 40%, 시군 40%, 기업 20% 이상
소방 안전	소방 시설	매출액 200억원 이하 중소기업(제조업) 또는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	2천 만원 이내	경보설비, 무선화재감지기, 노후 전기배선 교체, 자동확산 소화기, 방화벽, 스프링클러, 피난설비, 위험물(리튬 등) 보관장소 설치 등 ※ 매칭비율 : 기업 순이익별 차등 보조 (20%~30% 이상)
	작업 환경	소기업 범위 내 매출액 100억원 이하 중소기업(제조업)		작업공간(바닥, 천장 등), 작업대, 적재대, 환기·집진장치, 컨베이어 작업대 등 ※ 매칭비율 : 기업 순이익별 차등 보조 (20%~30% 이상)

※ 자세한 지원자격 및 내용은 분야별 세부 지원기준 확인 필수

※ 작업환경 분야는 경기도 지침에 따라 최대 2천만원 지원

2.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주 소: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청 서관 8층 기업혁신과
- 접수시간: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신청서류는 기한[8. 12.(수) 18:00] 내 도착분에 한함

※ 우편 신청 시 담당자 수신 여부 유선 확인 필수 (☎031-729-2583)

○ 제출서류

공통서류	1. 사업계획서(서식) 1부 2. 자부담확약서(서식) 1부 3. 시설물 유지 동의서(서식) 1부 4. 사업자등록증 1부 5. 중소기업 확인서 1부 6. 사업추진 동의서(토지·건물주 동의서, 입주자협의회 동의서) 1부 7. 사업비 산출내역 증빙서류(내역서 및 세부 견적서) 1부 8.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9.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2026. 7월 이후 발급) 1부 10. 최근 3년 매출액 증빙서류 1부
추가서류 (해당 시)	1. 뿌리기업 확인서 1부 2.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 인증서 1부 3.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서 1부 4. 경기도 유망기후테크 지정기업 확인서 1부 5. 경기도 「기업 RE100」 참여기업 확인서* 1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발급 6. 산업재해 미발생 기업 확인서* 1부 *최근 3년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희결과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급) 7.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기업 확인서 1부 8. 여성기업 확인서 1부 9. 자부담 확보 증빙서류(제출 가능한 경우) 1부

※ 제출서류의 각종 서식은 붙임 1~2 사업계획서 참고

※ 위 서류 외에도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3. 유의사항

○ 심사기준표에 따라 평가하며 경기도 승인 후 최종 선정함

○ 심사결과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되, 총예산 한도 초과 시 후순위 업체는 잔여예산 범위 내에서만 지원(신청금액에서 감액 결정) 될 수 있음

- 사업비는 부가가치세(VAT)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출
 - ※ 부가세 및 지원한도 초과금액은 기업이 부담
- 본 사업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사용이 필수인 사업임
- 보조금 교부결정 이후 계약 등의 절차가 이루어져야하며, 결정 이전 계약 및 시공(납품) 등이 완료 될 경우 지원 불가
- 사업 신청 시에는 자부담 확인서를 우선 제출하고, 사업 확정 후 착공 전까지 자부담 금액이 입금된 통장사본(사업신청자 명의) 제출
 - ※ 자부담금 미확보시 사업 불가
- 사업분야별(노동, 지식, 작업) 중복 지원 불가. 단, 소방시설 분야는 타 분야 사업과 중복지원 가능함.
- 사업 선정 후 포기 또는 취소한 기업은 향후 2년간 사업 지원 불가
- 분야별 세부 지원기준의 제외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선정 불가
- 신청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선정 심의에서 제외함
- 사업계획서 미흡(세부 사업비 산출내역서 미포함 등), 지원 내용과 무관한 사업 포함 시 선정심의 산정 불가
- 계약에 관한 사항(지방계약법령을 따름)
 - 사업비 15백만원(VAT 제외) 이상 공사는 반드시 건축공사업 또는 해당 공종 전문건설업 등록업체를 시공자로 선정
 - ※ 전문건설업 등록 업체는 대한전문건설협회(www.kosca.or.kr)사이트에서 조회 가능
 - 전기공사, 소방공사는 건축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하며, 전기공사업, 소방공사업을 등록한 공사업자가 시공해야함
 - 사업비 20백만원(VAT 제외) 이상인 경우는 누리장터(nuri.g2b.go.kr)를 이용하여 사업 공고 후 시공자와 계약 체결 추진
 - ※ 단, 아래의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제조, 구매용역
 - 시공업체가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에 해당하는 경우 (여성기업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
 - 전체 사업비 중 자부담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4. 문의처: 기업혁신과 기업고도화팀(☎031-729-2583)

5. 분야별 세부기준

① 노동복지(노동환경)

구 분	세 부 사 항																			
지원대상	성남시 소재 중·소기업 (제조업)																			
지원내용	기숙사, 휴게실, 식당, 화장실, 샤워실, 세탁실, 정화조 등의 설치 및 개·보수 ※ 지원허용 : 보일러, 순간온수기 등의 기계설비 ※ 지원제외 : ① TV, 냉장고, 선풍기, 에어컨, 식탁 등의 집기류, 소모품류 ② 사업비 중 부지 및 건물 매입비, 임차료, 이자, 소모품 등 해당 시설·설비 개·보수에 직접적으로 소요되지 않는 비용 《 기숙사 신축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열악한 중소기업 대상으로 공장부지 내 기숙사 건축 시 지원 ※ 건폐율 용적률 등 저촉 관련 사전협의 - 제외대상: 신규로 공장신축 또는 이전하는 기업체 경우, 공장부지 외 지역 기숙사 신축, 공사추진 중인 경우																			
지원요건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 (휴·폐업체 제외) ■ 총 사업비가 최소 10백만원 이상 사업 ■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200억원 이하 기업																			
재원비율	■ 기업 순이익별 차등 보조 (자부담20%~30% 이상) <table><tr><th rowspan="2">순이익 구간</th><th colspan="3">재원 비율(%)</th></tr><tr><th>도</th><th>시군</th><th>자부담</th></tr><tr><td>5천만원 이하</td><td>40</td><td>40</td><td>20</td></tr><tr><td>5천만원 초과 ~ 2.5억원 이하</td><td>37.5</td><td>37.5</td><td>25</td></tr><tr><td>2.5억원 초과</td><td>35</td><td>35</td><td>30</td></tr></table>	순이익 구간	재원 비율(%)			도	시군	자부담	5천만원 이하	40	40	20	5천만원 초과 ~ 2.5억원 이하	37.5	37.5	25	2.5억원 초과	35	35	30
순이익 구간	재원 비율(%)																			
	도	시군	자부담																	
5천만원 이하	40	40	20																	
5천만원 초과 ~ 2.5억원 이하	37.5	37.5	25																	
2.5억원 초과	35	35	30																	
지원한도	■ 도비 20백만원, 시군비 20백만원 이내 ※ 총사업비 제한 없음 (초과액은 자부담으로 충당 조건)																			
지원우대	■ 뿌리기업,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 ¹⁾ 및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 기업 RE100 참여기업 및 유망기후테크 지정기업 ■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기업 ²⁾ ■ 여성기업 및 여성 종업원 20% 이상인 기업 ■ 자부담 확보 증빙서류 제출 가능한 사업 ■ (신규) 최근 3년 산업재해 미발생 기업 ³⁾																			
제외대상	■ 타 유사사업(정부, 경기도, 시·군 등)과 중복지원 ■ 임대·전대 공장의 경우 건물주·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려운 사업 ■ 사업 착공 전까지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사업 ■ 사업지원 이후 시설물 유지에 대한 동의가 불가능한 사업 ■ 무허가 건물 및 신규로 공장신축(증축포함) 또는 이전하는 기업체 ■ 최근 5년간 '기업환경 개선사업' 지원내역(노동·작업)이 있는 기업 ■ 시설이 양호하여 개선이 필요하지 않은 사업 ■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2 노동복지(지식산업센터)

구 분	세 부 사 항
지원대상	성남시 소재 지식산업센터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
지원내용	주차장(주차설비 포함) 및 화장실 등 공공시설물의 개보수, 노후 기계실 및 전기 설비 개보수 ※ 지원제외 : 사업비 중 부지 및 건물 매입비, 임차료, 이자, 소모품 등 해당 시설.설비 개.보수에 직접적으로 소요되지 않는 비용
지원요건	■ 준공 후 7년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 ■ 총사업비가 20백만원 이상 사업
재원비율	■ 도비 40%, 시.군비 40%, 자부담 20%(이상)
지원한도	■ 도비 20백만원, 시군비 20백만원 이내 ※ 총사업비 제한 없음 (초과액은 자부담으로 충당 조건)
제외대상	■ 타 유사사업(정부, 경기도, 시·군 등)과 중복지원 ■ 시설이 양호하여 개·보수공사가 불필요한 경우 ■ 건물주.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려운 사업 ■ 사업 착공 전까지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사업 ■ 사업지원 이후 시설물 유지에 대한 동의가 불가능한 사업 ■ 최근 5년간 '기업환경 개선사업' 지원내역이 있는 지식산업센터 ■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 1)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 : 3년 이상 도내 중소기업 중 일자리 증가율, 근무환경, 기업성장성이 우수한 기업
2)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기업 : 상시노동자 50인 이상 기업 중 3.1% 이상 장애인 고용
3) 공모기준일 최근 3년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결과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급) 상 무재해인 경우

3 소방안전(작업환경)

구 분	세 부 사 항																			
지원대상	성남시 소재 소기업 (제조업)																			
지원내용	작업공간 내부(바닥, 천장, 벽면, 창호 등) 개보수, 작업공간 외부 지붕 개보수, 적재대, 작업대, 환기.집진.공기순환장치 설치, LED조명 설치, 컨베이어 작업대 ※ 지원제외 : 소모품, 생산 설비, 주문제작 작업대 등 자산성 품목 (예) 작업대 + 설비 부착 = 주문제작																			
지원요건	■ 사업자등록 후 1년이상 영업 중인 업체 (휴.폐업체 제외) ■ 총 사업비가 최소 5백만원 이상 사업 ■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의 기준에 맞는 기업 중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100억원 이하 기업																			
재원비율	■ 기업 순이익별 차등 보조 (자부담20%~30% 이상) <table><tr><th rowspan="2">순이익 구간</th><th colspan="3">재원 비율(%)</th></tr><tr><th>도</th><th>시군</th><th>자부담</th></tr><tr><td>5천만원 이하</td><td>40</td><td>40</td><td>20</td></tr><tr><td>5천만원 초과 ~ 2.5억원 이하</td><td>37.5</td><td>37.5</td><td>25</td></tr><tr><td>2.5억원 초과</td><td>35</td><td>35</td><td>30</td></tr></table>	순이익 구간	재원 비율(%)			도	시군	자부담	5천만원 이하	40	40	20	5천만원 초과 ~ 2.5억원 이하	37.5	37.5	25	2.5억원 초과	35	35	30
순이익 구간	재원 비율(%)																			
	도	시군	자부담																	
5천만원 이하	40	40	20																	
5천만원 초과 ~ 2.5억원 이하	37.5	37.5	25																	
2.5억원 초과	35	35	30																	
지원한도	■ 도비 10백만원, 시군비 10백만원 이내																			
지원우대	■ 뿌리기업,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 및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 기업 RE100 참여기업 및 유망기후테크 지정기업 ■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기업 ■ 여성기업 및 여성 종업원 20% 이상인 기업 ■ 자부담 확보 증빙서류 제출 가능한 사업 ■ (신규) 최근 3년 산업재해 미발생 기업																			
제외대상	■ 타 유사사업(정부, 경기도, 시·군 등)과 중복지원 ■ 임대.전대 공장의 경우 건물주.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려운 사업 ■ 사업 착공 전까지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사업 ■ 사업지원 이후 시설물 유지에 대한 동의가 불가능한 사업 ■ 무허가 건물 및 신규로 공장신축(증축포함) 또는 이전하는 기업체 ■ 최근 5년간 '기업환경 개선사업' 지원내역(노동·작업)이 있는 기업 ■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4 소방안전(소방시설)

구 분	세 부 사 항																			
지원대상	■ 성남시 소재 중·소기업 (제조업) ■ 성남시 소재 지식산업센터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																			
지원내용	■ 경보설비, 무선화재감지기, 자동화재탐지설비, 방화벽, 스프링클러, 피난설비, 자동확산 소화기 등 자체 소방시설 설치·개보수 ■ 위험물(리튬 등) 보관 장소 격벽 및 자동소화장치 설치 ■ 노후 전기배선 교체(작업공간만 해당: 연구실, 사무실 제외) 등 ※ 지원제외 : 설치 시설이 아닌 소화기 등 이동이 가능한 기구 (예) 일반 소화기, 간이소화용구 등																			
지원요건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 후 1년이상 영업 중인 업체 (휴·폐업체 제외) ■ 총 사업비가 최소 2백만원 이상 사업 ■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200억원 이하 기업 (지식산업센터) ■ 준공 후 7년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 ■ 총사업비가 20백만원 이상 사업																			
재원비율	■ 지식산업센터 : 도비 40%, 시·군비 40%, 자부담 20%(이상) ■ 기업 순이익별 차등 보조 (자부담20%~30% 이상) <table><tr><th rowspan="2">순이익 구간</th><th colspan="3">재원 비율(%)</th></tr><tr><th>도</th><th>시·군</th><th>자부담</th></tr><tr><td>5천만원 이하</td><td>40</td><td>40</td><td>20</td></tr><tr><td>5천만원 초과 ~ 2.5억원 이하</td><td>37.5</td><td>37.5</td><td>25</td></tr><tr><td>2.5억원 초과</td><td>35</td><td>35</td><td>30</td></tr></table>	순이익 구간	재원 비율(%)			도	시·군	자부담	5천만원 이하	40	40	20	5천만원 초과 ~ 2.5억원 이하	37.5	37.5	25	2.5억원 초과	35	35	30
순이익 구간	재원 비율(%)																			
	도	시·군	자부담																	
5천만원 이하	40	40	20																	
5천만원 초과 ~ 2.5억원 이하	37.5	37.5	25																	
2.5억원 초과	35	35	30																	
지원한도	■ 도비 20백만원, 시·군비 20백만원 이내																			
지원우대	■ 뿌리기업,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 및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 기업 RE100 참여기업 및 유망기후테크 지정기업 ■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기업 ■ 여성기업 및 여성 종업원 20% 이상인 기업 ■ 자부담 확보 증빙서류 제출 가능한 사업 ■ (신규) 최근 3년 산업재해 미발생 기업																			
제외대상	■ 타 유사사업(정부, 경기도, 시·군 등)과 중복지원 ■ 임대·전대의 경우 건물주·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려운 사업 ■ 시설이 양호하여 개·보수공사가 불필요한 경우 ■ 사업 착공 전까지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사업 ■ 사업지원 이후 시설물 유지에 대한 동의가 불가능한 사업 ■ 무허가 건물 및 신규로 공장신축(증축포함) 또는 이전하는 기업체 ■ 최근 5년간 '기업환경 개선사업' 지원내역(소방시설)이 있는 기업 ■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참고]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7. 10. 17.>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2. 도매 및 소매업	G	
33. 정보통신업	J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 제외)	
35. 부동산업	L	
36.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10억원 이하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참고] 뿌리산업의 범위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1. 12. 16.>

뿌리산업의 범위(제3조 관련)

□ 기반 공정산업

1. 주조산업

구분	분류번호	업종명 또는 품목명
뿌리기술 활용업종	24131	주철관 제조업
	24311	선철주물 주조업
	24312	강주물 주조업
	24321	알루미늄주물 주조업
	24322	동주물 주조업
	24329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29230101	주물주조기계

2. 금형산업

구분	분류번호	업종명 또는 품목명
뿌리기술 활용업종	29294	주형 및 금형 제조업

3. 소성가공산업

구분	분류번호	업종명 또는 품목명
뿌리기술 활용업종	24121	열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24122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24123	철강선 제조업
	24221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2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29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5912	금속단조제품 제조업
	25913	자동차용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25914	그 외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29224101	액압 프레스
	29224102	기계 프레스
	29224801	금속 단조기
	29224802	금속 인발기

	29224803	나사 전조기
	29224804	금속선 가공기
	29224809	기타 금속성형기계

4. 용접산업

구분	분류번호	업종명 또는 품목명
뿌리기술 활용업종	24132	강관 제조업
	24133	강관 가공품 및 관 연결구류 제조업
	24290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25122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업
	25123	압축 및 액화 가스용기 제조업
	25130	핵반응기 및 증기보일러 제조업
	26224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26291	전자축전기 제조업
	26292	전자저항기 제조업
	26293	전자카드 제조업
	26294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유도자 제조업
	26299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30121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30122	화물자동차 및 특수 목적용 자동차 제조업
	30201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30202	자동차 구조 및 장치 변경업
	30203	트레일러 및 세미트레일러 제조업
	30320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31111	강선 건조업
	31112	합성수지선 건조업
	31113	기타 선박 건조업
	31114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31201	기관차 및 기타 철도차량 제조업
	31202	철도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
	31311	유인 항공기, 항공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31312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31321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31322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31910	전투용 차량 제조업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25995100	용접봉
	27216109	기타 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
	28909301	아크 용접기
	28909302	저항 용접기
	28909309	기타 전기용접기
	29199201	가스 용접기 및 절단기
	29199209	기타 용접기
	29271102	반도체 조립 장비
	29271103	칩마운터(Chip mounter)

5. 표면처리산업

구분	분류번호	업종명 또는 품목명
뿌리기술 활용업종	25922	도금업
	25923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25929	그 외 기타 금속가공업
	26221	인쇄회로기판용 적층판 제조업
	26222	경성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26223	연성 및 기타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20499210	금속표면처리용 화합물
	28909804	전기도금 및 전기분해용 기기
	29299104	금속 표면처리기

6. 열처리산업

구분	분류번호	업종명 또는 품목명
뿌리기술 활용업종	25921	금속 열처리업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29150101	공업용로
	29150103	전기로

☐ 차세대 공정산업

☐ 소재다원화 공정산업

1. 사출·프레스산업

구분	분류번호	업종명 또는 품목명
뿌리기술 활용업종	22191	고무 패킹류 제조업
	22213	플라스틱 시트 및 판 제조업
	22241	운송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49	기타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29292101	플라스틱 사출 성형기
	29292102	플라스틱 압출 성형기
	29292103	진공 및 열 성형기
	29292109	기타 플라스틱 제조기계
	29292200	고무 가공기계

2. 정밀가공산업

구분	분류번호	업종명 또는 품목명
뿌리기술 활용업종	25924	절삭가공 및 유사 처리업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29221101	레이저 가공기
	29221102	방전 가공기
	29221109	기타 전자응용 절삭기계
	29223101	머시닝센터
	29223102	전용기
	29223201	수치제어식선반
	29223202	범용선반
	29223801	드릴링기
	29223802	보링기
	29223803	밀링기
	29223804	탭핑기
	29223805	연삭기
	29223806	기어절삭기
	29223807	톱기계(금속용)
	29223809	기타 금속절삭가공기계

3. 적층(積層)제조산업

구분	분류번호	업종명 또는 품목명
뿌리기술 활용업종	23112	안전유리 제조업
	23122	디스플레이 장치용 유리 제조업
	25911	분말야금제품 제조업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29222100	디지털 적층 성형기계
--------------------------	----------	-------------

4. 산업용 필름 및 지류 공정산업

구분	분류번호	업종명 또는 품목명
뿌리기술 활용업종	17124	적층, 합성 및 특수 표면처리 종이 제조업
	22212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22292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29291109	기타종이가공기계

○ 지능화 공정산업

1. 로봇산업

구분	분류번호	업종명 또는 품목명
뿌리기술 활용업종	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

2. 센서산업

구분	분류번호	업종명 또는 품목명
뿌리기술 활용업종	26295	전자감지장치 제조업

3. 산업지능형 소프트웨어 산업

구분	분류번호	업종명 또는 품목명
뿌리기술 활용업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4. 엔지니어링 설계산업

구분	분류번호	업종명 또는 품목명
뿌리기술 활용업종	7212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비고

1. 분류번호, 업종명 및 품목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에 포함된 뿌리기술 활용업종이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이라도 원재료를 1차 성형·가공하여 잉곳(ingot), 판, 봉, 관 등 1차 소재를 생산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3. 차세대 공정산업 중 지능화 공정산업은 기반 공정산업 또는 소재다원화 공정산업과 연계되거나 결합되어 활용하는 산업으로 한정한다.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 표에 열거된 뿌리산업의 업종명 또는 품목명 외에 뿌리산업에 해당하는 업종명 또는 품목명을 추가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